

<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 계산 II >

1. 그 밖의 소득세법상 세액공제

구분		내용
외국납부 세액공제 (법인세법 有, 이월공제 ○)	공제액	· $\min(①, ②) \rightarrow$ 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단, 퇴직소득·양도소득은 이월공제× ① 외국납부세액 ② 한도 : 산출세액× $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금액}}{\text{종합소득금액}}$
	이중과세 조정방법	① 사업소득, 양도소득 :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중 선택 ②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 : 세액공제만 적용
재해손실 세액공제 (법인세법 有, 이월공제 ×)	요건	사업자의 재해상실비율*이 20% 이상일 것 * 전체 사업장 자산총액 기준으로 계산
	공제액	· $\min(①, ②)$ ① ㉠ + ㉡ ㉠ 재해발생일 현재 미부과·미납 소득세(가산금 포함)× 상실비율 ㉡ (산출세액-배당·기장·외국납부세액공제)× 사업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 × 재해상실비율 ② 한도 : 재해손실가액
배당 세액공제 (법인세법 無, 이월공제 ×)	공제액	· $\min(①, ②)$ ① G-up금액 ② 한도 : 산출세액 - 분리과세 세액 → 취지 :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결정세액이 최소 한 분리과세시 세액만큼은 되게하기 위함
근로소득 세액공제 (법인세법 無, 이월공제 ×)	상용근로자	근로소득 산출세액이 ① 130만원 이하인 경우 : 근로소득 산출세액 × 55% ② 130만원 초과하는 경우 : $\min(㉠, ㉡)$ ㉠ $715,000 + (\text{근로소득 산출세액}^* - 1,300,000) \times 30\%$ ㉡ 한도* * 근로소득 산출세액 : $\text{종합소득 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근로소득금액}}{\text{종합소득금액}}$
	일용근로자	산출세액 × 55%(한도×) *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: $(\text{일급여} - 100,000) \times 6\% \times (1 - 55\%)$
기장 세액공제 (법인세법 無, 이월공제 ×)	공제대상	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재무상태표·손익계산 서·합계잔액시산표·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
	공제액	· $\min(①, ②)$ ① 산출세액 × $\frac{\text{기장된 사업소득금액}}{\text{종합소득금액}} \times 20\%$ ② 한도 : 100만원

전자계산서 발급·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(법인세법 無, 이월공제 ×)	공제배제	20%이상 누락 신고시, 장부 5년간 미보관시(불가항력 제외)
	공제대상	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2018.12.31.까지 발급하여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
	공제액	· $\min(①, ②) \rightarrow$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동일 ① 발급건수 $\times$ 200원 ② 한도 : 연 100만원

*¹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

총급여액	한도
3,300만원 이하	740,000원
3,300만원 초과 ~ 7,000만원 이하	· $\max(①, ②)$ ① 740,000원 - $\{(\text{총급여액} - 33,000,000\text{원}) \times 8 / 1,000\}$ ② 660,000원
7,000만원 초과	· $\max(①, ②)$ ① 660,000원 - $\{(\text{총급여액} - 70,000,000\text{원}) \times 1 / 2\}$ ② 500,000원

2.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

(1) 월세액세액공제

① 요건
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(세대주가 월세액세액공제,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

② 공제액 : $\min(①\text{월세액}, ②\text{한도: } 750\text{만원}) \times 10\%$

(2) 전자신고 세액공제

① 요건

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

② 공제액 : 2만원